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6. . . (제 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의 영업비밀을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재산 침해 단속에 있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실효성과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무단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상품 형태모방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완화함.

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7조의3, 안 제20조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단속 권한이 없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업무범위를 확대함.

다. 영업비밀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액 인정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6항)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손해 배상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안 제18조)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받지 않은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를 “비밀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를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나”로 하고, “공무원”을 “공무원(보호원의 장이 이 항에 따른 조사, 수거 및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원 소속직원으로서 보호원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호원의 장이”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호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의 행정기관으로 본다.

제8조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호원의 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으로 한다.

제9조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호원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의 정도
3.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5. 그 밖에 침해와 관련된 제반 사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 중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위탁업무”로 한다.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 중 “아목부터 차목까지는”을 “아목 및 차목은”로 한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

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정당한 권한을 넘어 그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하였음에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보호원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나 수거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원 소속직원으로서 보호원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u>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u>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p> <p>3. ~ 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비밀로</u>-----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u>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p>	<p>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 ----- ----- -----, <u>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또는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 -- -----</p>

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
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
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
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
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
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

--- 공무원(보호원의 장이 이
항에 따른 조사, 수거 및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원 소
속직원으로서 보호원의 장이 지
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② -----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 또는 보호원
의 장이 -----

----- . 이 경우 보호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의
행정기관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보호원의 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

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⑤ (생략)
<신 설>

----.

제9조(의견청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호원의 장은 -----

-----.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⑤ (현행과 같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의 정도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②
(생략)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

- 3.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 4.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 5. 그 밖에 침해와 관련된 제반사정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⑤ -----
----- 위탁업무 -----

-----.

<삭제>

다.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정당한 권한을 넘어 그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는 행위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하였음에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 경쟁행위를 한 자

2. (생략)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생략)

② ~ ⑤ (생략)

③ -----

-----.

1. -----(아목 및 차목은-----

2.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

-----.

1. ----- 공
무원(보호원의 장이 제7조제1
항에 따라 조사나 수거를 하
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원 소
속직원으로서 보호원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 락 처	042-481-5842